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청렴감찰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

1. 청렴감찰처-20300호('18.6.18.)“소방시설물 관리방안 개선대책 수립 요청”과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, 청렴감찰처 공직기강 현장점검시 소방시설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시설물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방시설물 관리방안

지적사항	협조 요청사항	비 고
역 및 관리소 등 침실내 출입문 상부 피난유도등 가림막 설치	침실 등 모든 출입문 상부 피난구 유도등 가림막 즉시 철거	화 재 안 전 기 준 (NFSC) 303 제9조 ③항 2.
역 및 관리소 등 출입문 상부 피난 유도등 미 설치	기능실 신설, 개량, 기존실의 추가 구획 등으로 소방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 후 기계사업소에 소방공사 시행 요청	화 재 안 전 기 준 (NFSC) 303 제5조 ①항1.

참고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제9조제1항 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한 자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·관리 등.

붙임 : 관련문서 사본 1부. 끝.

서울교통공사사장

수신자 라1-아18, 라2-아19, 나1-2, 다1, 마27, 아1-3

차장 나종순 처장 06/20
김정석

협조자 기계처 부장 이성우

시행 기계처-20459 (2018.06.20.) 접수 ()

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-48(용답동) / www.seoulmetro.co.kr

전화 6311-9837 /전송 6311-4377 / sooni05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